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 06. 10.

환 경 부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사업 추진체계	2
III. 보조금 집행 · 관리 절차	5
IV. 보조금 편성 · 교부 · 보고 절차	15

1. 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4년 사업내용

- 사업명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사업
- 2024년 사업비 : 수소전기자동차 총 8,550대, 국고보조금(자치단체자본
보조) 총 571,350백만원 규모로 편성

<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

구 분	2024년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예산액	보급 물량
합 계	571,350백만원	8,550대*
수소승용차	153,000백만원	6,800대
수소버스(저상)	191,100백만원	910대
수소버스(고상)	210,600백만원	810대
수소화물차(11톤급)	3,750백만원	15대
수소폐기물청소차	10,800백만원	15대
스택 교체 지원(24년 신규)	2,100백만원	30대(60개)

* '24년 수소차 보급물량 8,550대에 스택 교체 지원물량 30대는 제외(미포함)

- 보조금 집행체계 : 환경부(본부 직접 수행) ↔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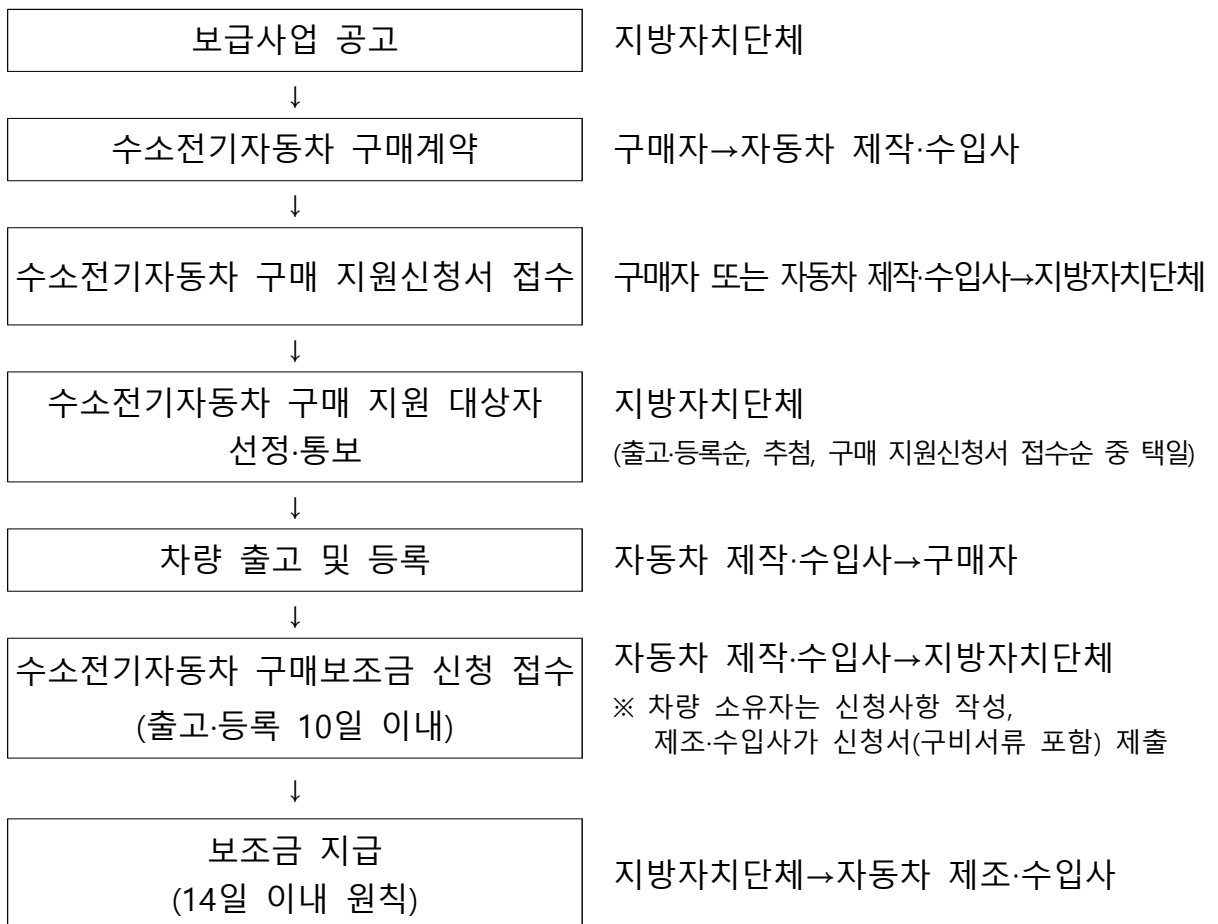
II

사업 추진체계

1.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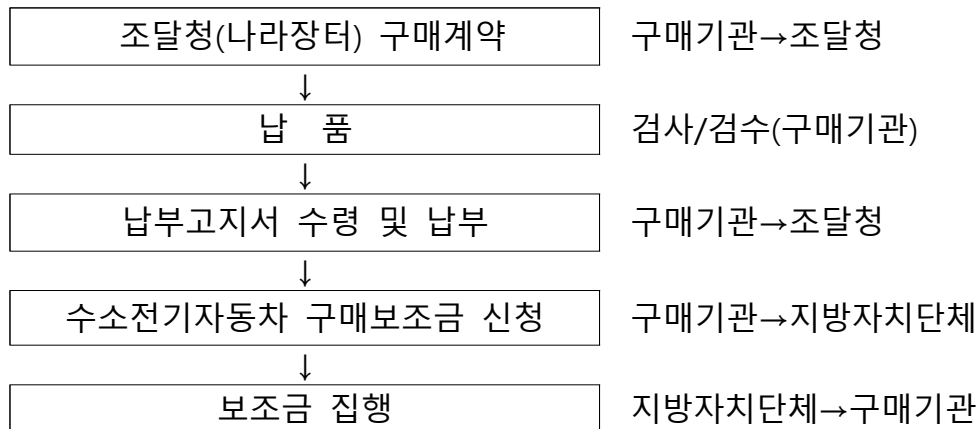
1-1.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1. 민간부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버스 간)의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함

1-1-2. 공공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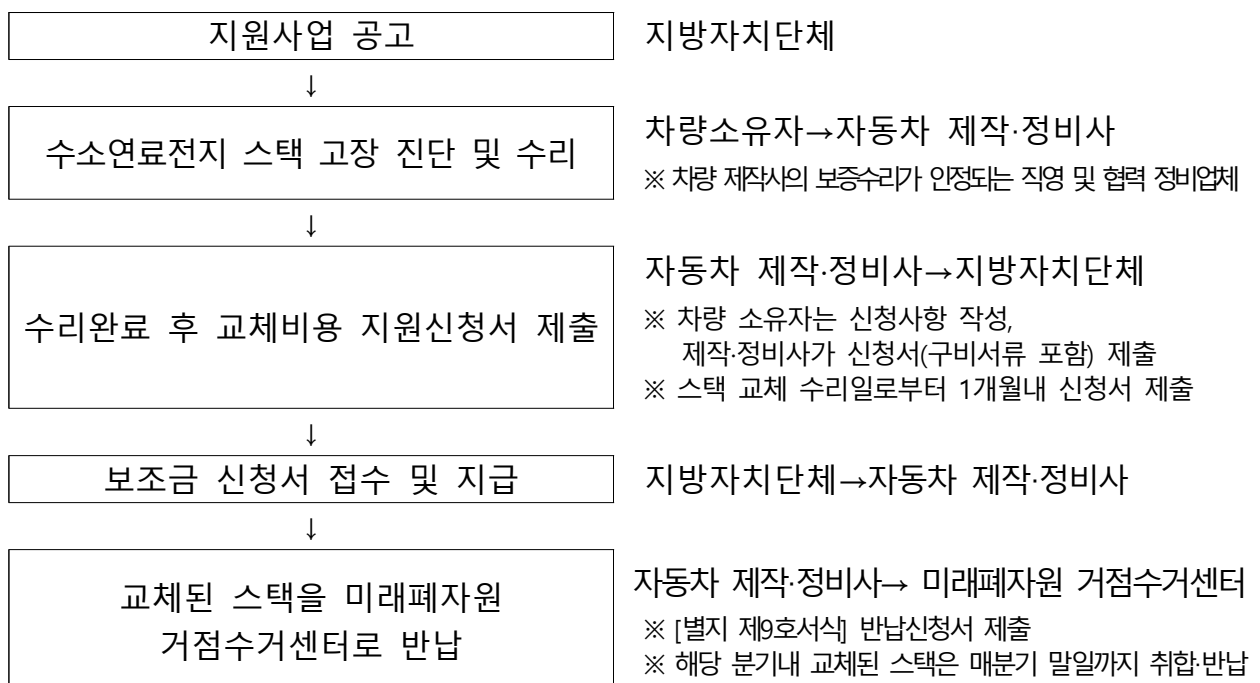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조달청을 통한 구매가 불가할 경우 민간부문 절차 준용 가능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1-2.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사업



- 차량 소유자는 수소연료전지 스택 고장진단 차량에 대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편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수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사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스택을 교체하는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해당 분기 내 교체된 스택을 매분기 마지막 날(3, 6, 9,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 반납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스택 반납시 반납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반납받은 스택에 대해 반납 확인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2.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 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민간·공공)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1-1.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승용차, 버스(저·고상), 화물차(트럭), 폐기물청소차* 등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폐기물청소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으로 한정

1-2.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사업

- 환경부의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버스 소유자 중 출고일로부터 5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50만km 경과 후 스택 고장판정으로 최초 교체(2개 각 1번씩)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 정부의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버스 소유자는 교체일로부터 2년까지(의무운행기간) 운행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전에 등록말소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함

◆ 지원 조건 ◆

- ① '23년 산업부 수소연료전지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스택 교체비용을 선지원 받은 차량 제외
- ② 차량 제작사의 보증수리가 인정되는 직영 및 협력 정비업체로부터 스택 고장판정을 받은 차량 대상(예방적 교체 미지원)
- ③ 당해연도 지원사업 공고 이후 교체에 한해 지원하며, 출고일로부터 5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50만km 경과 후 2개까지 교체비용 지원

2.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붙임 2와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 개정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3.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선정 절차

3-1.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신청

- 보조금 대상차종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수소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2. 신청서 검토

- 환경부장관은 보조대상 및 기준 적합성 여부 등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 대상차종 여부를 확정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내용이 보완,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완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3-3. 보조금 대상차종 통보·공지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통보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차량명[모델명 포함], 제작사 등)하여야 함

3-4. 보조금 대상차종 변경 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 받은 차종이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달라질 경우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4.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4-1. 수소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 대상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

차 종	대당 지원금액(천원)	비 고
수소승용차	22,500	정액보조
수소버스(저상)	210,000	
수소버스(고상)	260,000	
수소화물차(11톤급)	250,000	
폐기물청소차	720,000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대당 지원액은 환경부에 통보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해야 한다.
- 수소전기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 사후관리체계(A/S센터 운영 등), 경유차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수소전기자동차간 보조금을 2025년부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성능 평가방식 및 차등 기준 등은 별도 정하여 공고한다.

4-2.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

사업명	수량 (개)	보조금액(백만원)		비 고
		국고	지방비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60	35/개	20/개	정액보조

※ 수소버스 대당 연료전지 스택 2개(총 11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정부의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서 연료전지에 대해 출고일로부터 9년 또는 주행거리 90만km까지 보증해야 한다.

5. 보조금 집행 절차

5-1. 민간 부문

5-1-1. 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경부 사전승인 후 별도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 공고한 물량에 신청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공고 여부는 지자체 자체결정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에 가입한 민간기업,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임차한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량수요가 있는 경우 법인 물량을 지자체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별도 공고할 수 있음

※ 대량수요가 있는 법인은 공고물량의 20%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나, 공고 1개월 후 잔여물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임을 환경부에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고내용에 추가 가능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5-1-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3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5-1-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④구매 계약일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 버스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수소승용차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공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버스 간)의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 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기간 지역 거주요건 확인 시 '구매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급대수, 보급시기 등을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야 함.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아직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 개인에게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충전소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설치계획을 알려주는 등 충전 불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1-4. 보조금 집행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도로 보급할 경우에는 노선 운행 등과 관련된 필요한 장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제작·수입사 등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정계좌의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음(선금급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5-2. 공공 부문

5-2-1.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3호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5-2-2. 보조금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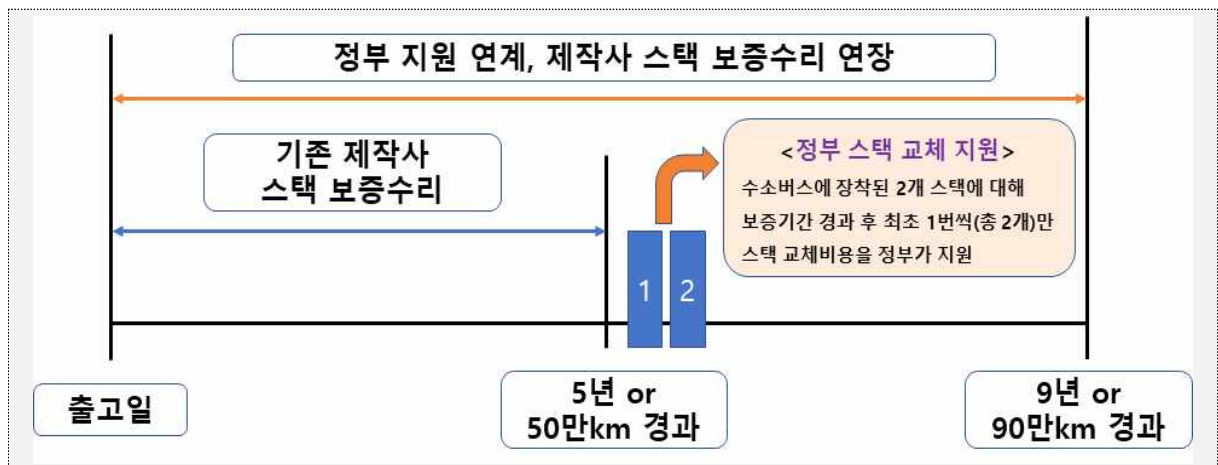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5-3. 스택 교체 지원

-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은 교체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별지 4호 서식)에 근거하여 자동차 제작사 또는 자동차 제작사가 지정한 정비사에게 직접 집행하여야 함
 - ※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소유자/보조금수령자)가 직접 작성하고 제작·정비사가 증빙 및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정비사가 지정한 계좌로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지원조건 변화(사용본거지 변경, 소재지 변경 등)를 감안하여 최초 차량구매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현재 시점의 지원조건(사용본거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원함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개념도>



- 스택 고장유무는 ①스택 핀홀(연료전지 내 분리막에 구멍이 생겨 냉각수 유입)과 ②스택 자체 성능 저하로 정상주행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한다.

<연료전지 스택 교환수리 기준>

①스택 핀홀	▶ 아래 3개 중 1개 이상 증상이 증빙자료로 확인된 경우 1. 진단장치에 의해 '스택핀홀*' 코드로 진단된 경우 (Total 전압 396V, 셀전압 0.85V 이상 정상) 2. 스택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20kΩ 미만인 경우 3. 스택 냉각수 누출된 경우(냉각수 혼입으로 배출수 색상 변화 : 무색투명(정상) → 파랑색)
②성능 저하	▶ 아래 2개 중 1개 이상 증상이 증빙자료로 확인된 경우 1. 진단장치에 의해 '수소누출/리크' 코드로 진단된 경우(수소농도 0.8% 이상 감지) 2. 출력성능 부족 및 시동 불가일 경우 (스택 전류 0~50A 영역의 출력전압 350V 이하, 전류 250A 영역의 출력전압 260V 이하)

6. 보조사업 관리

6-1.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해야 함

6-2. 의무운행기간

-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한 보조금(국비+지방비) 등 회수

- 수소버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스택 교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연료전지 스택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본 지침 붙임3 보조금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해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3.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 회수요율

스택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6-3.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환경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아니 됨
 - 또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 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해야 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 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가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차량 공장도가격, 수입신고필증 및 계약관련 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매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6-4. 기타 사항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액에 해당되는 시·도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인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보조금의 예산안 신청

1-1.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스택 교체 지원 대상 차량의 수요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신청

1-2.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보조금법 제4조 및 제6조)

- 신청기한 : 시·군·구 → 시·도(3월), 시·도 → 환경부(4월)
 - ※ 보조사업자는 환경부 및 기재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엄수
- 신청서류
 -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신청
 -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를 첨부
- 신청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제출

2. 보조금의 교부

2-1. 집행계획의 수립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2. 보조금의 교부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물량의 급격한 변경 또는 원활한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2-3. 보조금의 교부

- 교부결정(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하여 아래 사항 등을 검토한 후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및 사업여건
 - 다만,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물량의 급격한 변경 또는 원활한 보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의 통지(보조금법 제19조)
 - 환경부장관은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하며, 보조금은 집행실적 확인 등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필요 자금을 지급
 - ※ 관련기관 통보 시 환경부 내부 관련부서(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에도 전달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경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보조사업 집행상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시 패널티 적용될 수 있음

4. 보조사업 완료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8호 서식)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집행 잔액(환수액, 이자 포함)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수소전기자동차: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및 차량등록증 등 차량구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스택교체지원 :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및 교체지원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 지원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용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무운행기간(5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 개정·시행(2022.6.30.)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규정) 이번 개정 규정 중 “공고 1개월 후 잔여물량 지원 가능(법인)” 사항은 이전 지침에 따라 2024년 1월 15일 이후 공고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

- 붙임**
1.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2.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3.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 회수기준(사용기간별)

[별지 서식]

1.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수소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7.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별지 제7호서식)
8.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별지 제8호서식)

[붙임 1]

보조금 업무 처리 흐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신청 및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 보조금 신청서를 전년도 5.31까지 기획재정부 제출(환경부→기재부)

↓

보조금 예산 통지

- 전년도 9.15까지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환경부)

↓

- 국회 예산 확정 즉시 지자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연도 1월, 교부신청 기한 및 관계서류 제출토록 지자체 통보(환경부)

↓

- 사업수행기관이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시기 등 결정

↓

- 교부 결정시 사업수행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통보

보조금 집행 및 집행·실적보고

- 환경부의 교부결정 통보 후 지방자치단체는 차량 구입 및 스택 교체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집행
- 수행상황은 사업수행기관이 분기(월)마다 환경부에 보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폐지 승인 시 사업수행기관이 환경부에 보고

[붙임 2]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

구분	제작사	차종명	충전주행 거리 (km)	연료소비 효율 (km/kg)	국고 보조금 (백만원)
승용	현대자동차(주)	넥쏘	609	96.2(17''), 93.7(19'')*	22.5
승합	현대자동차(주)	일렉시티 FCEV	474	21.9	210
승합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35	26.08	260
화물	현대자동차(주)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	570	17.5	250
폐기물 청소차	(주)에이엠특장	에이엠수소10톤 암롤트럭	-	12.9	720
폐기물 청소차	(주)에이엠특장	에이엠수소9.3톤 압축식진개차	-	12.9	720

* () 안의 수치는 타이어의 구경을 의미함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붙임 3]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 회수기준

(사용기간별)

1. 연료전지 스택 사용기간별 보조금(국비+지방비) 회수요율

스택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사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text{사용기간} = (\text{말소등록신청일} - \text{스택 교체일}) / 30\text{일}$$

[별지 제1호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					
제 작 사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제원관리번호			
		배출가스인증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연 료 명		승차정원(인)		공 차 중 량	
구동 연료전지 종류		연료전지 출력전압(V)		연료전지 용량(A)	
전동기 종류		전동기 최고출력 (ps/rpm)		전동기 최고토크 (kgm/rpm)	
전동기 정격전압(V)		최고속도(km/h)		연료탱크용량(L)	
☐ CO ₂ 배출량 측정결과					
구 분		CVS-75모드	HWFET모드	복합모드	
5cycle 보정	CO ₂ 배출량(g/km)				
	연료소비율(km/kg)				
☐ 측정기관					
시험기관명			측정일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첨부서류 > 1. 시험보고서 1부 2.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1부 3. Coast Down 및 도로부하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 외관사진(사면도) 1부 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통보서 1부 6.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7. 인증받은 원제작차에 특장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생략받은 차량의 경우 ① 제원관리번호통보서(특장 전 차량, 특장 후 차량) ② 미완성차 제작사의 연비 동등성 확인서 ③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서(한국환경공단) ④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한국환경공단) ⑤ 자동차 외관사진(사면도) 1부					

[별지 제2호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					
제 작 사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제원관리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연 료 명		승차정원(인)		공 차 중 량	
구동 연료전지 종류		연료전지 출력전압(V)		연료전지 용량(A)	
전동기 종류		전동기 최고출력 (ps/rpm)		전동기 최고토크 (kgm/rpm)	
전동기 정격전압(V)		최고속도(km/h)		연료탱크용량(L)	
☐ CO ₂ 배출량 측정결과					
구 분		CVS-75모드	HWFET모드	복합모드	
5cycle 보정	CO ₂ 배출량(g/km)				
	연료소비율(km/kg)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별지 제3호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 구비 서류 : 구매계약서 등 해당 지자체 요청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성명 : 년 월 일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000시장 · 군수(도지사)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 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000시장 · 군수(도지사)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차량 소유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차량등록지				연락처	
차종 및 모델명		차량번호		금회 교체 수량	개
		차대번호		보조금 신청액	
주행거리(km) ※ 고장판정 시점의 누적 주행거리		최초출고일		최초등록일자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니 보조
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진대지, 통장사본(정비주체), 기타 지자체 요청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지원 사업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보조금 지원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정비사)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후관리

· (환경부, 지자체) 교체 지원 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 및 정산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지출에서 정하는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000시장 · 군수(도지사) 귀하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본 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였으며, 지원조건 등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이 남아있음을 고지하고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스택 교체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 또는 폐차 말소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정비주체는 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에 동의
-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사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스택을 교체하는 경우, 해당 분기 내 교체된 스택을 매분기 마지막 날(3, 6, 9,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 반납
-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차량소유자, 보조금수령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위 신청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제출자(정비사업자명) : (직인)
주 소 :
연 락 처 :

000시장 · 군수(도지사) 이사장 귀하

(첨부)

보조금 신청 관련 사진 대지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계기판 사진 (고장판정 시점의 누적 주행거리 확인용)
진단장비 고장코드, 경고등 사진 등 ①	진단장비 고장코드, 경고등 사진 등 ②
교체 전 스택 사진(시리얼 넘버 포함)	신품 스택 사진(시리얼 넘버 포함)

※ 사진은 상기 예시 외 추가 제출 가능하며, 첨부란 부족시 추가하여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수소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명 : 수소전기자동차 사업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수소전기자동차 사업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사업 기간		
계좌번호, 은행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구입계획서 첨부)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 일정 1부(월별 추진일정)			

(첨부)

2024년 사업계획(안)

I. 기본현황

☐ 사업자 :

☐ 법적근거

○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적 :

○ 내용 :

☐ 총사업비(사업기간) : 천원 (20○○ - 20○○, ○년)

☐ 보조금 보조율 :

II. 2023년도 수소전기자동차 사업 추진현황

☐ 일반현황

○ 사업기간 :

○ 사업내역 :

○ 소요사업비 :

☐ 2024년 사업추진 경과

○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상황

Ⅲ. 2023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출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기재 하고 () 원인행위 기준으로 기재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국비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IV. 2024년도 예산 및 집행계획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환경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집행계획

- 보급대상 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 계획
- 보급 후 운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V. 수소전기자동차 사업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VI. 향후계획

☐ 미흡한 점 해소중심으로

☐

☐

[별지 제6호서식]

국 고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2024년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조 사업명 : ○○○○○○○○○○ 사업
- ☐ 보조 사업자 : ○○○○○○○○○○
- ☐ 교 부 목 적 : ○○○○○○○○○ 지원
- ☐ 예 산 과 목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세목	시·도	예산액	기교부결정액	금회교부결정액	교부잔액
합계					
330-0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

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우리부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

(/4분기)

1. 사업명 : 수소전기자동차 사업 /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사업

2. 추진사항

☐ 보급현황

(단위 : 대, 개)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전기자동차										
스택 교체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수소전기자동차	스택 교체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

1. 사업명 :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사업

2. 추진실적

☐ 보급현황

(단위 : 대, 개)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전기자동차										
스택 교체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소전기자동차	스택 교체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첨부서류

-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 나.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및 운행관련 서류
- 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수소버스 연료전지스택 반납 신청서

1. 반납신청자	신청자명(사업자명)					연락처	
	소재지						
2. 반납사유 ([]에 √ 표시)	[] 고장, [] 기타 ()						
3. 반납 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대번호	스택 일련번호	차량 모델명	스택 교환 정비사업자	
						명칭	소재지
	1	9840000	KMCFK17YPRC035355	220505-64	00 수소버스	00정비	00시
	2						
	3						
	4						
	5						
	6						
	7						
	8						
	9						
10							
4. 반납일시	2000-00-00		5. 반납장소	00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			
6. 기타 특이사항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스택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반납내역은 필요시 작성란을 추가하여 작성 및 제출 가능

[별지 제10호서식]

수소버스 연료전지스택 반납 확인 증명서

1. 반납신청자	신청자명(사업자명)					연락처	
	소재지						
2. 반납사유 ([]에 √ 표시)	[] 고장, [] 기타 ()						
3. 반납 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대번호	스택 일련번호	차량 모델명	스택 교환 정비사업자	
						명칭	소재지
	1	984/0000	KMCFK17YPRC035355	220505-64	00 수소버스	00정비	00시
	2						
	3						
	4						
	5						
	6						
	7						
	8						
	9						
10							
4. 반납일시	2000-00-00		5. 반납장소	00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			
6. 기타 특이사항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스택이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